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92
----------	-----

2019. 10. 25.(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형용 의원 등 6인

나. 발의일자 : 2019년 10월 8일

다. 회부일자 : 2019년 10월 11일

라. 상정일자 : 2019년 10월 18일

-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형용 의원)

가. 제안사유

- 인구감소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기존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출산 지원만을 규정한 것으로 고령화 및 지역 인구감소(저출산, 인구유출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종합적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 : 5개 시도 제정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남)

나. 주요내용

- 인구정책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 및 도민의 책무(안 제3, 4조)
-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도에서 추진할 인구정책사업 내용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5조)
-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인구정책 추진 공로자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부칙 제2조)

3. 검토보고 요지 (이강근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배경

- 충청북도의 경우 총 인구수는 최근 5년간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11개 시·군별로 보면, 청주, 충주, 진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이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충청북도 시·군별 인구증감 추이>

(단위 : 명)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9월
충 북	1,583,952	1,591,625	1,594,432	1,599,252	1,599,339
청주시	831,912	835,197	835,590	837,749	839,428
충주시	207,913	208,350	208,316	210,504	210,504
제천시	136,138	136,517	136,432	135,386	134,916
보은군	34,296	34,221	34,053	33,680	33,139
옥천군	52,404	52,267	51,766	51,465	51,132
영동군	50,693	50,552	50,240	49,715	48,883
증평군	36,671	37,308	37,783	37,317	37,469
진천군	67,981	69,950	73,677	78,218	80,933
괴산군	38,787	38,973	39,054	39,133	37,875
음성군	96,396	97,787	97,306	95,830	95,184
단양군	30,761	30,503	30,215	30,255	29,876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또한 충북의 합계출산율도 전국평균에 비해서는 높지만, 매년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고령인구비율도 전국평균에 비해 매년 1.5% 이상 높은 수치를 보임

<최근 5년간 충청북도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 명)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국	1.205	1.239	1.172	1.052	0.977
충 북	1.363	1.414	1.358	1.235	1.172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최근 5년간 충청북도 고령인구비율 추이>

(단위 : %)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9월
전 국	13.15	13.53	14.21	14.76	15.30
충 북	14.82	15.12	15.83	16.37	16.93

※자료: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 출산율 저하와 더불어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지역인구의 타 지역 유출에 있으며, 충북의 경우 직업과 교육 등을 위한 청년 인구의 유출이 가장 심각함

<충청북도 20대(20~29세)청년 시·도간 전·출입 현황>

(단위: 명)

구분	2016	2017	2018
시도간 전입 (A)	19,661	19,935	21,748
시도간 전출 (B)	21,798	22,152	23,397
청년인구 유출 (A)-(B)	-2,137	-2,217	-1,649

※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이에 인구구조의 변화(저출산, 인구 고령화, 인구 유출 등)에 대응한 광역차원의 종합적 인구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 현재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출산 지원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고령화 및 지역 인구감소(저출산, 인구유출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종합적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본칙 4개장 17개조와 부칙 3개조로 구성됨.
- 안 제1조부터 안제5조(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발굴 및 지역별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조성을 위한 노력 등 도의 책무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특히 안제2조 용어 정의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기존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셋째아 이상으로 정의하였던 것을 본 조례안에서는 둘째아 이상으로 정의하여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을 확대함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2. “다자녀가정”이라 함은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u>셋째이상 자녀</u> 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u>둘째아 이상</u>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 안 제6조에는, 5년 단위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음
-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은 사회적 환경 변화와 중앙정부의 역점 추진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판단됨

- 안 제8조에는, 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인구정책사업에 대해 규정 하였으며, 규정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관련기관, 법인·단체, 개인 등에 보조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0조부터 제15조(제3장 충청북도 인구정책위원회)에서는,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구정책위원회의 기능 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인구정책 중 임신·출산·양육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기존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저출산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이 담당하고 위원수도 9명 이내였으나, 본 조례에 따른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격상하고, 위원수도 20명 이내로 확대함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 저출산대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기획관리실장 - 위원수 : 위원장 포함 9명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 인구정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행정부지사 - 위원수 :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 안 제16조 및 제17조(제4장 보칙)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효율적 대응 및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의 운영과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기관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함

- 부칙에서는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와, 종전의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충청북도 저출산 대책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위원은 본 조례에 따른 인구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도록 한 경과조치를 규정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청북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조례안예고 및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절차상으로도 타당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 론 요 지 : “생략”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박형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2
----------	-----

발의연월일 : 2019년 10월 8일
발 의 자 : 박형용, 박상돈, 최경천,
심기보, 육미선, 이상욱

1. 제안이유

- 인구 감소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구정책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 나.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 및 도민의 책무(안 제3, 4조)
- 다.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도에서 추진할 인구정책사업 내용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마.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5조)
- 바.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사. 인구정책 추진 공로자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아.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부칙 제2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9-52호
- 다. 협의 : 기획관리실 청년정책담당관
- 라.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청북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자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문화·복지·주택·교통 등 관련 지원 정책 다. 그 밖에 인구감소 및 유출 극복과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정책
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도의 책무) 도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인구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가 시행하는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인구정책

제6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도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비전과 전략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인구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협조)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시·군, 공공기관, 법인·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인구정책사업) ① 도지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구교육사업
2. 결혼·임신·출산·양육·유입인구에 대한 지원사업
3.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
4. 일자리·문화·교육·복지·주택·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5.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관련기관, 법인·단체, 개인 등에 보조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며, 제2항의 보조금의 지원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인구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충청북도 인구정책위원회

제10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3. 인구정책사업의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기획·복지·경제·농정·문화·건설·여성 관련 부서의 실·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충청북도교육청 관련부서의 국장급 공무원
3.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4. 시민단체 대표자

5.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 ④ 위원회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6조(포럼 등 운영) ① 도지사는 인구구조 변화의 효율적 대응과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럼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도지사는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기관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 제4조(인구정책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충청북도 저출산 대책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위원은 본 조례에 따른 인구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단,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제외한다.
- ②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020. 12. 16.까지로 한다.

관계법령 발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의 고령화“라 함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①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
 -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인구정책 사업, 인구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2. 비용 발생 요인

- 인구정책 기본계획(5년) 수립에 따른 용역 비용
- 출산양육지원금 및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소요
- 인구정책위원회 외부위원 수당, 여비 등 운영 소요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제8조(인구정책사업), 제10조(인구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및 제13조(회의 등)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구정책 기본계획(5년) 수립에 따른 용역, 인구정책사업 및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기초로 산출

나. 추계 결과

- 인구정책 기본계획(5년) 수립 용역비 : 90,000천원(5년)
- 출산양육지원금 : 43,396,800천원(5년)
-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 41,184,000천원(5년)
- 인구정책위원회 운영비 : 2,000천원(매년)

다. 재원조달방안

- 인구정책 기본계획(5년) 수립 용역비 : 도비(100%)
- 출산양육지원금 : 도비(30%), 시군비(70%) ※ 단, 청주시 80%
-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 국비(3%), 도비(19%), 시군비(19%), 기타(59%)
- 인구정책위원회 운영비 : 도비(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	-	-	-	-	-	
	-	-	-	-	-	-	
세 출	15,105,300	17,321,200	17,631,200	17,631,200	16,661,200	84,679,800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	90,000	-	-	-	90,000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1,000	2,000	2,000	2,000	2,000	9,000	
출산양육지원금	9,360,000	8,509,200	8,509,200	8,509,200	8,509,200	43,396,800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5,744,000	8,720,000	9,120,000	9,120,000	8,480,000	41,184,000	
재원 조달	15,105,300	17,321,200	17,631,200	17,631,200	16,661,200	84,679,800	
의존 재원	소 계	-	288,000	345,600	345,600	345,600	1,324,800
	보조금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국비)	-	288,000	345,600	345,600	345,600	1,324,800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재원	소 계	3,369,000	3,829,120	3,807,320	3,807,320	3,687,320	18,500,080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	90,000	-	-	-	90,000
	인구정책위원회	1,000	2,000	2,000	2,000	2,000	9,000
	출산양육지원금	2,246,000	2,082,120	2,082,120	2,082,120	2,082,120	10,574,480
	충북행복결혼 공제사업	1,122,000	1,655,000	1,723,200	1,723,200	1,603,200	7,826,600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특별회계	-	-	-	-	-	-	
특별회계	-	-	-	-	-	-	
시·군비	출산양육 지원금	7,114,000	6,427,080	6,427,080	6,427,080	6,427,080	32,822,320
	행복결혼 공제사업	1,122,000	1,655,000	1,723,200	1,723,200	1,603,200	7,826,600
기 타	충북행복결혼 공제사업	3,500,000	5,122,000	5,328,000	5,328,000	4,928,000	24,206,000

▶ 산출기초

- 인구정책 기본계획(5년) 수립 용역 : 90,000천원
- 출산양육지원금 :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240만원(매월 분할 지급)
-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 근로자 월 80만원, 농업인 월 60만원
- 위원회 참석수당 : 10명 × 연2회 × 100천원(수당) = 2,000천원